2013년 11월 2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월19일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칭찬 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이대건 과장(042-481-8957), 이희완 사무관(4394)
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실 조진형 실장(02-2124-3210), 안준연 팀장(3221)

간편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, 어렵지 않아요!
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회계준칙 개정 -

□ **중소기업청**(청장 한정화)과 **중소기업중앙회**(회장 김기문, 이하)는 **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회계규정의 작성기준이 되는 "회계준칙"을 개정**('13.11.4)하였다고 밝혔다.

* **(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)**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정한 회계준칙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체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

○ 이번에 개정된 회계준칙은 **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**('13.2.1)에 따라 변화된 회계기준과 **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**하고자 개정하였다.

* **(중소기업회계기준)**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IFRS)이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복잡하여, 중소기업에 맞는 간편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'13. 2. 1. 제정('14.1.1. 시행)한 바 있으며, 외감법 대상 제외 기업이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임

□ **주요 개정내용**으로는,

○ 현행 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양식을 폐지하여 **회계처리를 간소화**하고, 협동조합의 자산처리 방식 등을 변경된 **회계기준에 맞춰 개정**하였으며,

*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추정대차대조표, 추정손익계산서 폐지

○ 또한,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손톱 밑 가시로서 건의한 **조합의 매출액 회계처리** 방법에 대하여도 **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제시**하여 **회계처리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**하였다.

< 개정된 회계준칙의 조합 사업수익(매출액) 처리 예시>

① **(A조합)** 원자재 제조업체로부터 원자재 구매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원자재를 중개판매하는 경우 ⇒ **제품구입 원가를 제외한 판매(중개)수수료만 사업수익(매출액)으로 적용**

② **(B조합)** 조합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조합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을 구입(재고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조합이 부담)하여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⇒ **판매액의 총액을 사업수익(매출액)으로 적용**

□ 한편, **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개정된 회계준칙**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**12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**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,

○ 지역별 설명회 일정에 대하여는 **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들에게 개별 안내할** 예정이며, **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**(www.kbiz.or.kr)**에도 게시**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□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**회계를 처리하는데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처리**할 수 있게 되고, **회계의 투명성도 확보**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<참고>

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개정 현황

❑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에 대한 이해

○ 중소기업협동조합(비영리법인)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회계 규정을 규약으로 정하여 운용(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)하도록 하고 있으며,

○ 이에 따라, 1976년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을 제정·운용

❑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개정 사유

○ 중소기업의 회계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"중소기업회계기준"이 도입('14.1.1. 시행)됨에 따라, 이에 따른 정합성 확보

○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계정과목 변경 필요

❑ 그간 추진 경위

○ '13. 7월 :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개정의견 수렴
○ '13. 7~9월 :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개정 연구용역 추진
○ '13.11월 :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개정

❑ 주요 개정내용

○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된 회계기준 반영
- 자산평가방법, 유가증권・재고자산・감가상각 회계처리 상세 규정
- 충당부채 설정, 퇴직연금제도 반영,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추가
- 특별손익 폐지, 자본잉여금 항목 정비

○ 사용하지 않는 양식 불필요한 양식 폐지
- 입금전표, 출금전표, 추정대차대조표, 추정손익계산서

❑ 향후 조치계획

○ '13.12월 :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설명회 개최

<※ 회계준칙 개정 주요내용>

1.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양식 폐지

○ 입금전표, 출금전표, 추정대차대조표, 추정손익계산서

2.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반영(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)

구분	현행	개정
① 동종자산 교환시 취득원가 산정방법	공정가치 또는 양도자산의 장부가액	양도자산의 장부가액
② 특정차입금 차입원가 회계처리	자본화	자본화 또는 비용처리
③ 재고자산 회계처리	'취득원가'만 규정	취득이후 회계처리 추가
④ 유가증권 회계처리	'취득원가'만 규정	취득이후 회계처리 추가
⑤ 시장가격 있는 유가증권 거래비용 회계처리	거래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	거래비용을 비용처리
⑥ 감가상각 회계처리	'감가상각방법'만 규정	잔존가치와 내용연수 산정방법 등 상세 규정
⑦ 충당부채 회계처리	'충당부채 요건 및 종류' 만 규정	충당부채 환입시기 등 추가
⑧ 퇴직급여	<신설>	퇴직연금제도 변화 반영 (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)
⑨ 법인세비용 세분화	당기 부담 금액	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도 추가
⑩ 정부보조금 회계처리	<신설>	자산관련보조금, 수익관련보조금으로 구분
⑪ 사업수익 표시방법	<신설>	총액(매출액) 표시 가능한 기준 추가

3. 기타 계정과목 변경 등

구분	현행	개정
자산항목	유가증권	단기투자자산
	투자유가증권	장기투자증권
	<신설>	회비미수금
손익항목	단체계약사업수익	<폐지>
	<신설>	공제대행사업수익
	특별손익	사업외손익에 포함
	공동판매사업수익	공공시장공동판매수수료, 민수시장공동판매 수수료로 구분
	당기이익잉여금	당기순이익
	당기손실금	당기순손실
잉여금처분 계산서 항목	처분전이익잉여금	미처분이익잉여금
	처리전결손금	미처리결손금